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**노동부,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적용**

-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의 시행령 개정(안)을 마련해 6월 23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.
-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강제제도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음.
  - 2005년 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 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 시행시기, 급여수준, 단계적 상향계획 등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를 시행함.
- 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 시행령 개정(안)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시기,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,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-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되,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.
  -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함.
  -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잦은 생성·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 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를 신설함.
    -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 중 적용이 부적합한 재무건전성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.

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노동부, 6/23)